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5395호

시행일자 2019. 8. 5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**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안내**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7호 (2019.8.5.)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105호 (2019.8.5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6호, 2019.8.1.) 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가. 주요내용 :
-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(병상수⇒환자수)
- 야간간호료 신설
-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
-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
-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

나. 시행일 : 2019년 10월 1일부터
(단,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은 2020.1.1.부터,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은 2020.7.1.부터 적용)

다. 문의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 044-202-2743,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진희 044-202-2746

붙 임 : 1. 고시개정문 1부.
2. 관련 질의응답 각 1부.
3.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